

우리나라 지역의 재난대비 실태와 미국의 재난대비 정책 고찰 연구

위금숙* · 정안영** · 심지혜***

A Study of Emergency Preparedness Status of Korea's Local Government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olicies of United States' Government

Kum Sook We*, An Young Jeong**, and Jee Hye Sim***

접수일자: 2012년 7월 16일/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요 약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지역 재난대비 역량, 재난대응 준비 정책, 재난대응계획, 훈련, 평가, 보조금 제도

ABSTRACT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prepared for emergency response in order to minimize damages caused by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chemical incidents. In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current emergency preparedness status of Korea's local governments by studying laws and policies, and interviewing emergency managers. We have introduced policies to enhance emergency preparedness capabilities of United States' local governments. These policies could be useful for Korean government in developing policies to build up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of Korea's local governments.

KEYWORDS emergency preparedness capability, disaster response readiness, emergency preparedness policy, planning, exercise, evaluation, grant program

1. 서 론

태풍·호우, 구제역, 화학폭발, 환경오염 등 자연적·인적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초동대응 요원들의 신속·원활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구성원들의 역할, 기관 간 임무와 책임, 운영체계 등을 규정한 지역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응 조직과 자원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등 지역

차원의 재난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구제역, 신종플루 등 신종재난 및 불산 등 화학물질 사고까지 재난으로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재난대응의 일차적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태세를 살펴보고, 지역의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재난대비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지역의 재난대비 실태

2.1 재난대비의 정의

재난대비에 대한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회원,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E-mail: chief@crisis.re.kr)

**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

*** (주) 크라이시스매니지먼트 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

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는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재난대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재난발생이 예측될 때 수행하는 직전 활동과 재난발생 후 대피,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주민보호 등의 대응활동에 대해 평소 준비하는 활동에 국한하였다. 즉, 재난발생의 원인자체를 막는 예방점검이나 사망담 건설 등 장기 경감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2.2 관련 법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대비 활동에 대한 의무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다. 또한, 동법 제34조의2에서는 ‘중앙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대비 활동 지침에 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한 재난대비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하나이므로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는 구체적인 재난대비 실행방안으로 재난대비 활동 지침에 따른 재난 대응 세부계획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 확보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본부장이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스스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기라기 보다는 중앙부처 주도로 이끄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3 지역 재난대응 관련 계획

현재 지역에서 재난발생시를 위한 대표적인 재난대응 계획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작성한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지자체 장이 종합하여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유형별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내용 등이 작성되어 있다.

재난관리대책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방, 복구대책 부분은 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풍수해대책 예) 또는 복구사업 등의 사업계획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대비, 대응대책 부분은 실제 재난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매년 동일한 내용을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하게 카피하는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실제 재난대응 경험이나 훈련·연습을 통한 개선사항이 수시로 반영되지 않고 수록된 비상연락망의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변경되더라도 현행화 되지 않아 실제 재난발생시 계획서의 비상연락망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4 재난대비 추진 조직 및 수행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주요업무는 평시 안전점검과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등 재난안전분야의 중앙부처들이 시달한 문서에 따른 처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는 부족한 인력과 역량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위상은 말단 부서에 속해, 재난발생시 다른 부서를 총괄할 수 있지 못하다. 지역의 종합적인 재난대응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내 실·과·소 조차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난이 발생한 때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주요 역할은 재난피해 및 응급복구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상급자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로, 이를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시·도 소속인 소방기관과 국가직 경찰기관 등 조직법상 한계로 인해 상황파악이 쉽지 않다.

최근 발생한 부산 대티역 사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난관리 계통이 정보를 가장 늦게 입수하여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이 매우 낮다. 재난관리 부서에서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평상시는 중앙부처의 하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재난기간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야근 등의 특별근무와 며칠 동안 귀가를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재난대응계획이 미흡하여 재난발생시 갑자기 폭주

하는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지 못하므로, 재난관련 부서 직원만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재난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지 못한 가운데, 재난이 발생하면 임기응변식 대처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평시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관점으로 감사 등을 받게 되면 담당자만 문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기 때문에 재난관리 부서는 ‘아무리 잘 해도 본전이 아닌 본전 이하’인 자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면 좌천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문제 있는 공무원들이 재난관리 부서로 발령받고 있다.

재난대응 업무는 부족한 정보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므로 비상상황에서 순발력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필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일을 맡고 있다면 초동대응의 실패는 명약관하다. 주민의 안전에는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재난관리 분야에도 소방, 경찰, 군인 등과 같이 재난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

2.6 훈련·연습

훈련의 목적은 재난발생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들을 평상시에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훈련·연습은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전에 작성된 각본에 따라 대응자는 연기자로서 역할을 하는 훈련·연습이었다. 이에 2012년부터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인적재난 훈련은 각 기관이나 부서의 재난대응 시 책임과 역할 파악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토론형 훈련·연습으로 진일보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대응 훈련 시 주관부서와 실제 재난발생시 주관부서가 달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가 사고수습 주무부서이나 훈련 시에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훈련공문이 내려와서 부산시 재난관리부서(재난안전관리과)가 주관부서가 되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부산광역시 대티역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해 교통정책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사이에 사고수습 주체에 관해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이라고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도 김천시 환경관리과와 재난관리과 간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훈련 공문이 환경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이 시달하여, 재난관리과가 훈련을 주관하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중앙부처간 조율의 부재와 함께 훈련을 설계, 시행, 개선점 도출위한 회의 진행 등에 대한 훈련기획자가 부족함을 들 수 있다.

3. 미국의 지역 재난대비 역량 제고 정책

미국은 2001년도에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재난대비·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난대비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으로 재난대비 정책 추진 기관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재난관리체제(NIMS), 종합대비지침(CPG), 재난대응계획(NRP), 자율평가지표, 재난관리기준 및 인증체제를 개발하고, 교육·훈련 및 여러 가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의 재난대비 수준을 진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1 관련 법·제도

미국의 재난대비와 관련 법·제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3.2 종합대비지침(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line, CPG)

지방정부를 위한 종합대비지침인 CPG(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line)는 주(州)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난대응계획(EOP : Emergency Operation Plan)을 수립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등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이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개발한 지침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재난관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미국 재난관리체제(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s)와 미국 재난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상의 재난관리 개념을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CPG는 주(州)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 및 민간부문 등 재난대응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 팀의 작업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CPG상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 개념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재난대응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3.3 재난대응계획(Emergency Operation Plan, EOP)

미국의 재난대응계획은 지역의 재난대응 및 복구 조직

*)GAO Report April 2009, GAO-09-369. p.97-99

표 1. 미국의 재난대비 관련 법령 및 조문

법	개요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Stafford Act) 1974	- Stafford 법에서는 대규모 재난 및 긴급사태에 대해 주(州) 지자체, 부족국가, 개인, 비영리조직 등에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 대규모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시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연방조정관(Federal Coordination Officer, FCO)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청장에게 재난 대비 및 연방대응계획(FRP) 수립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설립된 법으로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설립하고 FEMA를 포함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직과 기관을 국토안보부 산하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 (HSPD 5) 2003	- “국내 사고 관리”가 제목인 HSPD의 목적은 국토안보법이 요구하는 NIMS와 NRP 구축을 통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내 사고관리 및 테러 공격, 대규모 재난 및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시 연방정부의 작전 조정 책임을 갖는 최고연방관(PFO: principal federal official)으로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명하고 있다.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Post-Katrina Act) 2006	-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응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FEMA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토안보부 내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한 법률이다. - 이 법률 하에 FEMA의 주요 임무는 리스크에 기반하여 대비, 보호, 대응, 복구, 경감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던 대비국(Preparedness Directorate)을 FEMA로 다시 이전시키며, FEMA가 국가통합센터(National Integration Center)를 설립하여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s), 국가대응틀(NRF : National Response Framework)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8 Annex 1 (HSPD 8 Annex 1) 2007	- “국가 계획”이 제목인 HSPD는 미국의 대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계획에 대한 표준적, 종합적 접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축, 개발, 유지하는 것을 규정한다.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표준화된 연방기획 프로세스(Standardized Federal Planning process): 통합 기획 시스템(Integrated Planning System) · 국가 기획 방침(National Planning Doctrine) · 국토안보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각각의 연방 부처와 기관의 운영적 및 전술적 계획 역량 자원화(resourced) · 전략 지침 문서(Strategic guidance statements), 전략 계획(Strategic plans), 운영개념(Concepts of operations), 운영계획(Operations plans) 및 각각의 국가기획시나리오(National Planning Scenario)의 전술적 계획(Tactical plans) · 각급 정부의 통합된 계획을 위한 시스템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8 (PPD-8) 2011	- 이 령의 목적은 테러리즘 활동, 사이버 공격,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위협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systemic preparedness)를 통해 안보(security)와 회복역량(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국가대비에 대한 각급 정부, 민간부문 및 NPO, 시민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PPD-8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대비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 · 국가대비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 · 국가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s) · 연간 국가대비실태보고서(Annual National Preparedness Report) · 대비태세 구축 및 유지(Build and Sustain Preparedness)

과 대책 등 재난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예기치 않은 재난발생 시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에 상관없이 모든 재난을 아우를 수 있는 재난대응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계획은 재난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부를 비롯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재난대응계획의 구성은 기본계획(Basic Plan) 부분과 함께 부록으로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

ESF)계획, 행정지원(Support)계획, 사고대응계획(Incident Annex) 등이 첨부된다.

3.4 대비역량 진단지표(Comprehensive Assessment for Readiness, CAR)

지방정부의 재난대비역량 진단지표 CAR(Comprehensive Assessment for Readiness)는 연방재난관리청과 국립재난관리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재난대응준비 역량은 진단하는 평가지표로서, 재난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州) 또는 지자체가 재난 발생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

한 것이다.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고, 재난관리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교정활동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CAR는 재난으로부터 경감,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운영에 대한 준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평가도구이다. 여기에는 법과 권한, 위험 식별과 위험평가, 위험 경감, 자원 관리, 계획, 지휘·통제·조정, 커뮤니케이션·경고, 운영·절차, 지리적 배치 및 시설, 훈련·연습·평가 및 교정활동, 위기 커뮤니케이션, 공공 교육 및 정보, 재무 및 행정 등 13개의 재난관리기능*(EMF: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자체평가지표는 주(州) 또는 지역의 재난관리 담당자가 국민에게 재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결정 과정에서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절차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R의 평가 결과 자료는 연방재난관리청의 지역 사무실로 전달되며, 이는 다시 재난관리능력에 대한 국가 전체의 보고서로서의 총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 본부로 보내진다.

이를 토대로 연방재난관리청과 주(州)의 재난관리담당자들은 합동으로 재난관리 성과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실천과제를 개발한다. 연방재난관리청장은 국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공하며 이는 국가 전체적인 재난관리능력과 재난대비역량 수준에 대한 종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역할을 한다.

3.5 재난관리인증체계(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 EMAP)

재난관리 인증체계(EMAP: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는 주(州) 및 지방 정부의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자발적인 국가적 인증 절차이다. 이것은 집합적으로 개발되고, 수립되어 있는 기존의 기준들과 독립적인 평가를 사용하며, 재난관리 프로그램들의 전략적 개선을 위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EMAP은 모든 위험을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들의 관리와 조정을 위한 지역(주, 카운티, 시 등)내의 책임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난관리기능들을 포함한다.

EMAP에 의한 재난관리 표준은 EMAP 인증이 평가되기 위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의한 64개 표준의 집합이다. 재난관리 표준은 지방정부의 재난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자

발적 인증 과정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다

3.6 보조금(Grant Program)

FEMA의 보호 및 국가 대비실에는 보조금관리관실(Grant Program Directorate)이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한 역량을 향상 시키고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지원, 즉 FEMA의 보조금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정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FEMA의 보조금 관리관실에서 담당하는 재난대비 관련 보조금 종류이다.

-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 소방관들을 위한 보조금(Assistance to Firefighters)
- 재난관리 성과 보조금 프로그램(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Program)
- 도시 간 철도승객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Intercity Passenger Rail Security Grant Program)
- 비영리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Non-profit Security Grant Program)
- 항만경계 보조금 프로그램(Port Security Grant Program)
- 교통체계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Transit Security Grant Program)
- 부족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Tribal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은 국가대비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 NPG)의 달성을 위해 주요 역량 개발 및 유지활동을 지원하는 등,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8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토안보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국토안보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SHSP), 도시지역 안전사업(Urban Areas Security Initiative, UASI), Operation Stonegarden(OPSG) 등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프로그램들은 기획, 조직, 장비구입, 훈련, 연습, 경영 및 행정 등의 여러 대비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는 재난대응계획의 수립,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의 구성,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의 수준, 평가 환류 등 재난대비 활동 면에서 재난대비 역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은 재난관리부서의 임

무와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들이 평소 안전점검, 상황파악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손발과 같은 역할로 재난관리 부서를 활용하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를 위한 부서로 판단할 수가 없고 이는 구조 조정 시 인력을 줄이거나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가 재난대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재난대비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재난대비정책에 대한 노력으로 재난대비와 관련한 법·제도, 종합대비지침, 지역의 재난대응계획, 관련 자율평가지표, 재난관리 인증체계, 보조금 제도, 재난대비 목표 설정 및 지역의 재난대비 실태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였다. 미국의 재난대비 정책은 우리나라의 재난대비 정책 개발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재난대비 정책 담당 중앙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며,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재난대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선진 재난관리체계 사례연구를 통한 한

국형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기획연구’[NEMA-기반-2012-90]과제의 성과입니다.

참고문헌

- 위기관리연구소(2010),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활동 지침 및 자율진단표준 개발연구, 행정안전부.
- 위기관리연구소 (2009), 우리나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기획연구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위기관리연구소 (2008)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운영지침 연구, 행정안전부.
- (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2010) 재난현장 상호공조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연구, 행정안전부.
- 강원도(2012), 안전관리계획.
-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 GAO-09-369 (2009), National Preparednes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Washington D.C., p.123.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 (CPG) 101, Washington D.C., p.124.
- Department of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2006),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 (EMAP), p.204.
-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 (2010), Emergency Management Standard, Lexington, p.26.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0), State Capability Assessment for Readiness (CAR), Washington D.C., p.136.